

카자흐스탄의 행정체계

I. 개관

II. 중앙행정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중앙정부조직과 관련 집행법률

III. 지방행정

1. 지방행정제도
2. 시의회 및 주의회(Maslikhat)
3. 지방정부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최 유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특집 Emerging Countries Ⅲ]

G20 정상회의의 개최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선진국과 선흥국 간의 가교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기초법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특집을 편성하였습니다.

I. 개관

1991년 구(舊)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카자흐스탄의 국가형태는 공화정이며, 정부형태는 강력한 대통령제이다. 1995년에 제정된 카자흐스탄 헌법은 제3장에서는 대통령, 그리고 제5장에서는 정부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1993년 1월에 채택된 카자흐스탄의 최초 헌법은 구(舊)소련 헌법에 서방 민주주의 모델을 접목시킴으로서 기형헌법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었다. 이후 1995년 8월 30일에 제정된 신헌법은 대통령의 권한강화와 양원제 등을 기

본적인 정부형태로 하였다. 그 후 1998년, 2007년, 그리고 2011년 헌법개정 이후에도 1995년 헌법의 기본적인 정부형태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II. 중앙행정

1. 대통령

카자흐스탄은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국내외 정책을 결정하고 외국과 국제관계에서 국가를 대표를 한다(헌법 제40조 제1항). 또한 대통령은 국민의 통합과 국가권력, 헌법의 수호,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상징이자 보장자가 된다(헌법 제40조 제2항).

2011년의 헌법개정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헌법 제41조 제1항). 그리고 '2011년 2월 3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헌법적 법률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적 법률 No. 404-IV'를 제정하여 5년 임기의 비정기적 조기(preterm)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였다(헌법 제41조 제3-1항). 헌법 제42조 제4항은 대통령의 삼선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헌법개정에서 이러한 제한은 초대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42조 제5항).

유효투표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된다(헌법 제41조 제5항). 그러나 그러한 후보자가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상위 두 명의 후보자가 결선투표를 하게 된다. 결선투표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수의 표를 받은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대통령의 주요한 권한은 다음과 같다(헌법 제44조).

- 카자흐스탄의 중요한 대내외 정책에 관해서 국민에게 매년 연설을 할 권한(연두교서)
- 의회에 관한 권한 :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 의회선거의 지정, 최초의회의 소집, 비정기상하원 합동회의 소집, 상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서명 및 공포할 권한 또는 법안 전체 내지 개별조항에 대한 재심의 요구와 환송을 할 권한
- 정부에 관한 권한 :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총리의 임명, 해임 권한. 총리의 제청으로 정부의 구성을 결정할 권한, 정부에 포함되지 않는 중앙 행정관청의 편성, 폐지, 개편 등의 결정 권한 등

- 상원의 승인을 얻어 중앙은행장, 검찰총장,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의장 등
의 임명, 해임 권한
- 외교 대표의 임명 및 소환
- 예산집행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2명의 위원 임명(임기 5년)
- 국가프로그램의 승인
- 총리의 제청으로 단일재정시스템의 승인
- 공화국 국민투표 수행 결정
- 국제조약의 협상 및 서명
- 최고국군통수권자
- 군최고사령관의 임면
- 훈장 등의 수여
- 사면권
- 안보소베트, 최고사법소베트 및 기타 자문협의기구의 구성
- 기타 헌법 및 법률에 따른 권한의 수행 등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집행을 하기 위한 범위에서 카자흐스탄 전역에 효력을 발생하는 정부명령(decrees)과 결정(resolutions)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45조 제1항). 헌법 제53조 제4항에 의거한 또는 헌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정부명령(decrees)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45조 제2항).

2.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헌법 제67조). 국무총리는 정부역할의 조직 및 감독 그리고 개별적인 정책의 대응, 정부결정(resolution)의 서명, 정부의 주된 정책방향과 대통령의 중요한 모든 결정에 대한 보고, 정부의 조직 및 감독 등과 관련된 기타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의 구조와 구성은 총리 선임 후 10일 이내에 총리가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의 제청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행정부 각료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 사임한다(헌법 제70조 제1항). 정부 및 정부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맡은 정부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대통령에게 사임할 권한을 갖는다(헌법 제70조 제2항). 대통령은 총리 해임권을 보유하며 총리가 해임될 경우 내각 전원이 사퇴한다(헌법 제70조 제3항). 내각은 의회가 정부 불신임 결의시 내각 해산을 대

통령에게 제출하며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내각 사퇴여부를 결정한다(헌법 제70조 제4항). 국무총리가 사임할 경우에는 내각 전체가 사퇴하게 된다(헌법 제70조 제5항).

3. 중앙정부조직과 관련 집행법률

(1) 개관

카자흐스탄 정부는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헌법상 정부는 집행기구체제를 지도하며, 집행기구 활동의 감독을 수행한다(헌법 제64조 제1항). 대통령 제 국가의 특성상 정부는 그 활동에 대해 카자흐스탄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질 뿐만이 아니라, 헌법 제53조 제6항에 규정된 경우에 의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헌법 제64조 제2항).

정부의 권한, 조직절차 및 활동에 대해서는 헌법법률로 정한다(헌법 제64조 제3항). 카자흐스탄 정부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구성한다(헌법 제65조 제1항). 정부는 각 업무마다 카자흐스탄 전역에 강제할 수 있는 행정결정(resolution)을 할 권한을 갖는다(헌법 제69조 제1항). 또한 국무총리는 행정명령(direction)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69조). 행정결정(resolution)과 국무총리의 행정명령(direction)은 헌법과 의회입법, 정부명령(decrees) 그리고 다른 대통령의 결정(resolution)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헌법 제69조 제3항). 하원이 재선출되기 전에 국무총리는 정부의 신임안을 제출할 권리를 갖는다. 하원이 정부의 신임을 통과시키면 정부는 책임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헌법 제70조 제1항).

중앙정부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66조).

- 사회-경제, 국방,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기본 방향을 결정
- 의회에 공화국 예산 및 예산 집행 보고서의 제출
- 하원에 법률안의 제출 및 법률의 이행 보장
- 국가소유재산의 관리
- 대외정책 수행 대책 마련
- 각부, 각 청과 기타 중앙 및 지방 집행기관 활동 감독
- 각부, 각 청 및 기타 중앙 및 지방 집행기관 법규의 전부 또는 일부 효력의 취소 및 중지
- 정부에 소속되지 않는 중앙집행기관장의 임면
- 기타 헌법,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부에 부과된 기능의 수행 등

(2) 각 부의 기능 및 주요 권한¹⁾

카자흐스탄의 중앙행정조직은 단일법률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각 부마다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1) 내무부

카자흐스탄에서 내무부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 내무부 규정(Положение о Министерстве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РК)”에 규정되어 있다. 카자흐스탄 내무부의 기본 역할은 사회질서 및 사회안보 유지, 범죄 및 마약의 퇴치, 마약, 무기에 대한 감독, 시민과 단체의 권리의 보장이다 (동 규정 제2항). 카자흐스탄의 내무부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교통수단의 등기절차 및 기술검사의 기준 정함.
- 교통수단 사용자의 등록
- 운전면허 시험 관리 감독
- 법률 위반 및 범죄예방 활동
- 범죄 수사 관련 업무
- 카자흐스탄 시민권 취득 관련 서류의 검사 및 등록
- 카자흐스탄 시민의 해외 거주를 위한 출국 및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 카자흐스탄 시민, 공무원,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등이 규정된 카자흐스탄의 입출국절차, 거주 및 경유 절차의 준수 여부 감독
- 외국인노동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법인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감독
- 카자흐스탄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 준수여부 감독
- 법인에게 컬러복사기, 폭발물, 맹독성 물질의 취득, 보관, 운송, 반입 및 반출에 대한 허가서 발급
- 법인에게 일반인용 및 업무용 무기의 보관, 운송, 반입 및 반출에 대한 허가서 발급
- 법인에게 마약물질의 사용에 대한 허가서 발급
- 개인에게 일반인용 무기의 취득, 보관, 소지, 반입 및 반출에 대한 허가서 발급 등(동 규정 제12항).

1) 아래의 각 부의 과제와 기능은 다음의 보고서에서 인용하였다. 김한칠 외 2인, 카자흐스탄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법제교류 연구 09-17-4, 한국법제연구원, 2009. 6. 30.

<관련 집행법률>

- 카자흐스탄 내무 기관법(Закон Об органах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РК)²⁾
- 내무부 군대법(Закон О Внутренних войсках Министерства внутренних дел)³⁾

2) 외무부

카자흐스탄 외무부의 기본 과제 및 기능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 정부령 제1118호에 규정되어 있다. 카자흐스탄 외무부의 기본과제와 기능은 아래와 같다.

<기본과제>

- 카자흐스탄 대외정책의 개념 및 기본 방향 수립 및 대통령 및 정부에 제안
- 카자흐스탄 대외정책노선 실현
- 카자흐스탄의 대외경제정책의 실현에 협조
- 카자흐스탄의 국제위상 강화에 협력
- 카자흐스탄의 권리 및 이익 보호
- 외국에서 카자흐스탄 국민 및 법인의 이익 보호
- 외교적 수단으로 카자흐스탄의 주권, 안보, 영토적 완전성의 보장 및 국제무대에서 외국과의 관계에서 카자흐스탄의 정치, 경제 및 기타 이익의 보장
-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위해 대외정치 및 경제 전략의 수립 및 제안과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국제적 주도권의 실현
- 외국 및 국제단체와 카자흐스탄의 외교 및 영사관계 실현 등

<기능>

- 외국 및 국제기구에 대하여 카자흐스탄의 대표
- 카자흐스탄의 국제조약의 협상 및 체결의 조직
- 국제조약 체결, 이행, 변경, 중단 및 종료에 대한 제안의 준비와 절차에 의거 대통령 또는 정부의 심의를 위해 해당 안의 제출
- 카자흐스탄의 국제기구 활동, 국제회의, 국제포럼 등의 참여 보장
-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범지구적, 지역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 역할 제고
- 카자흐스탄 및 외국에서 국제법 및 카자흐스탄 법령에 의거 영사기능의 수행

2) 동법에 의거 카자흐스탄 내무부는 사회질서와 안보의 유지, 범죄행위의 예방 및 근절, 인간과 시민의 자유와 관련의 침해 방지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동법 제1조).

3) 동법에 의거 카자흐스탄 내무부 군대는 내무부에 단일 시스템으로 편입되고, 내무부 군대는 개인, 사회 및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간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동법 제1조).

- 외국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국민과의 관계 발전
- 국제관계에서 카자흐스탄 법령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관련 집행법률>

- 국적법(Закон О гражданстве РК)⁴⁾
- 국경법(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е РК)⁵⁾
- 언론법(Закон О средствах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⁶⁾
- 국제조약법(Закон О международных договорах РК)⁷⁾

3) 법무부

법무부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는 법무부조직법(Закон Об органах юстиции)에 규정되어 있다. 카자흐스탄 법무부의 기본 기능은 ① 법령정비, ② 국제조약의 법적 보장 및 국제사법공조의 조율, ③ 등기업무, ④ 법률조력, ⑤ 형집행 관련 업무, ⑥ 지적재산권의 보장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법무부의 구체적 기본 기능은 아래와 같다.

- 법안의 연구 및 검토
- 법안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가기관 전문가들 및 외국전문가들의 초청
- 정부 및 총리의 위임을 받아 정부 관련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официальное разъяснение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 법령 정보화 및 시스템화, 법령정보의 컴퓨터 시스템 작업
- 국가기관과 단체들간의 법률분야 학술연구의 조율
- 카자흐스탄의 법령에 의거 외국과의 사법공조에 관한 국제조약의 준비, 조직, 체결 및 이행
- 카자흐스탄의 보증하에 체결되는 대출계약 등의 법률 검토
- 카자흐스탄 법률과 외국법률의 조화 및 통일성에 관한 문제의 분석
- 카자흐스탄에 체결한 국제조약의 내용을 국내법령에 반영
- 절차에 의거 지적재산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의 체결

4) 본법에 의거한 외무부의 권한은 외국에 거주하는 자들로부터 카자흐스탄 시민권과 관련한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접수, 외국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시민의 국적상실에 대한 등록 등이다(동법 제31조).

5) 본법에 의거한 외무부의 권한은 카자흐스탄 시민, 외국인 및 무국적자가 카자흐스탄의 국경을 이동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서류의 작성 및 기타 관련 업무의 수행이다(동법 제24조).

6) 본법에 의거한 외무부의 권한은 외국언론의 대표사무소 및 기자들의 등록업무 수행이다(본법 제24조).

7) 본법에 의거한 외무부의 권한은 국제조약 체결의 대외정책의 합목적성에 대해 의견을 주고(본법 제3조), 국제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외국 및 국제단체와 접촉을 하며(본법 제6조), 국제조약의 이행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한다(본법 제20조).

- 판사의 선발 및 배치
- 라이센스법에 의거 법률전문가(судебный эксперт)에 대한 라이센스의 부여
-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국가기관과 단체의 학술연구업무의 조율
- 법인, 지사 및 연락사무소의 등록 및 등기부 작성
- 호적등본의 등록, 주민등록증의 교부
- 국가기관의 등록된 법규목록의 공고
-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거래의 등기, 카다스트라⁸⁾ 업무의 수행, 질권의 설정 등기
- 국가공증인의 선발, 교육 및 배치, 라이센스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번호 사 라이센스의 발급, 중지 및 취소 결정
- 국가공증소의 관리 감독, 개인공증소 지원, 공증행위의 적법성 감독
- 라이센스법에 의거 사업형태에 따른 라이센스 부여
- 동사무소(орган записи ак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직원의 선발, 교육 및 배치
- 공식문서에 대한 아포스틸(апостиль)
- 형의 집행 관련 업무
-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령정비에 대한 제한
- 지적재산권에 대한 학술연구의 보장
-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국제협력
- 저작권의 등록
- 실시권계약의 등록
- 특히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 등

4) 재무부

카자흐스탄 재무부의 기본 과제 및 기능에 대해서는 재무부 규정(Положение о Министерстве финансов)에 명시되어 있다. 재무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예산의 집행 및 보고
- 세수 확보, 사회보장국가기금에 의무연금 등의 납입 확보
- 주류, 담배 및 개별적인 석유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유통의 관리

8) 한국의 토지 및 건물대장과 비슷하다.

- 세관 문제의 관리
- 국가가 보증한 차입에 대한 관리
- 국가자산의 처분
- 국가매수의 관리
- 과산절차의 감독(은행, 보험사 및 연금기금 제외)
- 회계분야 업무의 감독
- 국가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 불법자금세탁 및 테러지원 자금에 대한 재무모니터링 수행 등(동 규정 제10항)
- 공화국 예산 집행의 조직
- 공화국 예산에 관한 법률안의 준비작업에 참여
- 정부차관의 규모, 형태 및 조건의 결정
- 정부부채의 상환규모 등의 결정
- 국가보증의 제공
- 국가보증으로 이루어진 차관의 등록
- 국가가 보증한 비국가차입에 대한 의무의 이행보장
- 정부차관과 관련한 협상 및 계약 서명
- 국채의 발행
- 세관 분야 활동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
- 회계 분야 활동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
- 주류 및 담배의 생산 및 유통과 복권 사업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
- 국유기업의 정관 등의 승인
- 대외경제에 사용되는 물품용어집의 작성
- 국가수매 리스트의 작성
- 국가재산과 관련되는 이권(조광)계약(договор концессии)의 목록 작성
- 카자흐스탄 납세자 명부 작성
- 국유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권리의 주체(권한기관)
- 국유재산의 사유화에 대한 결정 및 수행
- 국가소유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 관세법에 의거 세관행정의 수행
- 대외무역 세관통계의 수행
- 조세채무에 대한 강제 압류의 수행

- 조세법 위반 퇴치 문제와 관련된 카자흐스탄의 국제의무 이행
-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조세채무의 발생, 이행 및 종료에 대한 설명
- 권한범위 내에서 외환관리의 수행
- 물품에 대한 관세가 정확히 부과되었는지에 대한 감독
- 카자흐스탄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합리적인 감독
- 국가수매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 국가보증제공 조건 및 절차 준수에 대한 감독
- 예산 및 국가보증차입 등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감독
- 국가수매계약 체결 전에 입찰의 재검토 및 입찰결과의 취소에 대한 결정 등(동규정 제11항)

<관련 집행법률>

- 외환관리법
- 카자흐스탄 국제외환기금, 세계개발은행, 국제금융협회, 다자간 투자보장 단체, 투자분쟁조정국제센터, 유럽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이슬람개발 은행 회원법⁹⁾

5) 노동사회보장부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장부의 기본 과제 및 기능에 대해서는 노동사회보장부규정(Положение о Министерстве труда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населения)에 명시되어 있다. 노동사회부는 노동, 노동의 보장과 보호, 고용, 사회적 보호, 연금 및 사회보장, 의무사회보험, 국민의 이민 등에 관한 정책 수립, 운영 및 분야별 조율 등을 기본과제로 하고 있다(동규정 제9항). 노동사회부의 기본 업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노동, 노동의 보장과 보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언
- 노동의 보장과 보호에 관련된 법규의 제정
- 보건부와 합의하여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노동이 금지되는 업무목록 및 중노동 업무목록 등의 작성
- 보건부와 합의하여 여성에게 노동이 금지되는 업무목록 작성

9) 본법에 의거 재무부는 카자흐스탄 정부를 대신하여 차관을 유치하고, 기타 다른 형태의 금융을 이용한다. 또한 카자흐스탄을 대신하여 국제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국제투자보장협회, 유럽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에 자금을 보장한다(본법 제2조).

- 국내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투자계약 프로젝트의 검토
- 카자흐스탄 정부가 정한 범위 및 절차에 의거 외국인 노동자 고용 쿼터의 할당
- 카자흐스탄 라이센스법이 정한 절차에 의거 외국으로 인력 송출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 및 취소
- 노동자의 직업숙련도 향상 및 직업재교육 수행
- 장애 등급의 결정, 장애원인, 노동상실정도 등의 결정
- 연금지급의 감독
- 사회보험국가기금의 재무건전성 감독
- 사회보장비 지급의 여부 결정
- 사회보장비 지급의 감독
- 사회보장비 지급을 위한 서류의 진정성 감독등(동규정 제10항)

6) 국방부

카자흐스탄 국방부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 국방법(Закон Об обороне 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ах РК)에 규정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국방 정책의 수립
 - 군사독트린, 군대의 발전 전략 등의 수립
 - 단일 군사-기술정책의 수행
 - 국방을 목적으로 정찰활동의 수행
 - 국방지출에 대한 감독
 - 군사학교의 활동 등의 감독
 - 국방산업 발전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에 참여
 - 군대의 적법성 및 법질서의 준수 여부 감독
 - 군인가족에 대한 사회적 법적 보장
 - 국방 및 군대 문제에 대한 법규의 제정 및 이행의 감독 등(동법 제22조)
- <관련 집행법률>
- 국경법(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е РК)¹⁰⁾
 - 수색법(Закон О оперативно-розыск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¹¹⁾

10) 본법에 의거 국방부는 카자흐스탄 영공을 방어하고, 카자흐스탄 군대의 카자흐스탄 국경 방어를 보장한다(본법 제24조 제4항).

11) 본법에 의거 국방부 수색기관은 다른 기관과 함께 수행활동을 수행한다(본법 제6조).

- 테러방지법(Закон О борьбе с терроризмом)¹²⁾
- 국방법(Закон Об обороне 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ах РК)¹³⁾

7) 농업부

카자흐스탄 농업부의 기본 과제 및 기능에 대해서는 농업부 규정(Полож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К)에 명시되어 있다. 농업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와 기능을 갖는다. 농업부는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농업경쟁력을 가지는 제품생산 장려 및 지원, 농업단지에 대한 정보 및 조언 제공, 농업 분야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야별 조율 등(동 규정 제12항)의 과제를 갖는다. 또한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 수자원의 이용 및 보호에 대한 관리
- 수자원의 모니터링, 하천(수자원)대장의 작성
- 곡물수출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
- 유해유기물처리제(화학유독물)의 목록작성 및 등록
- 동물계 이용에 대한 허가서 발급
- 동물계 대장의 작성 및 모니터링
- 희귀종 및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의 반출입에 대한 허가서 발급
- 어구(漁區) 개설 허가증 발급
- 어획 및 기타 동물포획에 대한 허가서 발급
- 가축유행병의 모니터링 및 가축유행병 상황의 연구
- 수의검역을 받아야 하는 조류제품에 대하여 수의서류의 발급
- 수의 표본 목록의 작성
- 산림자원 제공에 대한 입찰의 수행
- 단일산림국가목록의 작성, 산림국가모니터링의 수행
- 특별히 보호되는 지역에 대한 카다스트라 작성
- 수자원 이용 및 보호에 대한 국가정책의 이행에 참여
- 농촌 사회인프라 건설 및 농촌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 농촌 발전 잠재력 모니터링 등(동규정 제13항)

8) 교육과학부

카자흐스탄 교육과학부의 기본 과제 및 기능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 교육과

12) 본법에 의거 국방부 및 국가안보위원회, 내무부, 대통령보호국(Служба охраны Президента)은 대테러방지에 직접적인 권한을 갖는다(본법 제4조).

13) 본법에 의거 국방부는 군대의 군사·정치 및 군사·경제 운영을 수행하는 중앙집행기구이다(본법 제22조).

학부 규정(Положение о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К)에 명시되어 있다.

교육부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헌법상 권리와 자유의 보장, 청소년 정책의 수립, 과학 및 청소년 정책에 있어 국제공조의 실현, 교육 분야에서 국제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현, 대학의 학생 선발절차 및 기준 승인과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대학들의 경쟁 유도, 초등·중등·고등 교육의 학생 선발규칙 승인, 학년도의 시작 및 종료의 결정, 교직원 증명서 규칙의 승인, 교원 재교육 및 능력 향상의 수행, 해외 교육 절차 확정, 단일국가시험 및 종합시험 수행의 방법 개발 및 승인, 학위방어에 대한 학위위원회 규정의 승인, 대통령에게 카자흐스탄 어린이들의 상황에 대해 출판물에 공고, 법률에 의거한 장애인 교육의 보장 등의 과제를 업무로 하고 있다(동 규정 제13항).

- 칸디다트 및 박사학위 수여¹⁴⁾
- 국가 이름으로 칸디다트 및 박사학위 졸업장 수여, 조교수() 및 교수 임명장의 부여
- 고등교육 및 사회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법인에게 교육활동 수행 라이센스의 부여
- 국가예산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법인에게 교육활동 수행 라이센스 부여
- 종교교육을 수행하는 법인에게 교육활동 수행 라이센스 부여
- 카자흐스탄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국제단체 및 외국법인에게 교육활동 수행 라이센스 부여
- 교육과 관련하여 드러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서면명령서 교부
- 사교육기관의 등록
- 특수교육과 관련한 법규 이행의 감독
- 유아의 권리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 감독
-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의 감독, 법인이 수행하는 교육활동이 카자흐스탄 법령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감독 등
- 학위방어위원회의 조직
- 국가교육기관장의 임면 등(동규정 제14항)

14) 구소련권 국가의 학위제도는 우리와 달리 학사, 석사, 칸디다트, 박사과정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칸디다트 과정을 마친 경우에 국내에서는 박사학위로 인정한다.

9) 운송통신부

운송통신부의 기본 과제 및 기능은 운송통신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운송통신부는 운송·통신 분야의 정책의 수립 및 이행, 운송·통신 분야의 분야간 조율, 운송안보의 보장, 운송·통신 분야의 국제공조의 권한을 수행한다 (동규정 제13조).

운송통신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국제, 국내 정기승객화물운송수단 노선의 등록
- 외국의 운송인에게 카자흐스탄 영토 통과 허가서의 발급
- 카자흐스탄이 비준한 국제조약에 의거 카자흐스탄 운송인에게 외국의 영토 통과 허가서 발급
- 중량이 크고 규모가 큰 운송수단(외국 운송수단 포함)의 카자흐스탄 영토 운송에 대한 특별허가서 발급
- 카자흐스탄이 비준한 국제조약에 의거 국제차량운송과 관련하여 무허가시스템 국가¹⁵⁾에서 등록한 외국차량이 카자흐스탄에 임시 진입시 이에 대한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운송을 하는 외국운송인에게 카자흐스탄 통과에 대한 허가서 발급
- 위험한 화물의 운송을 수행하는 운송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 도로 부분 투자 및 사회정책의 이행
- 카자흐스탄 국가수매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보수 및 유지에 관한 업무
- 카자흐스탄에서 활동 중인 외국항공사, 그 지사 및 연락사무소의 등록
- 항공기 소유자에게 비행 유효기간 증명서의 발급
- 새로운 기종의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공장시험, 국가 및 사용시험을 거친 후 증명서의 발급
- 민간외국항공기에 대하여 카자흐스탄 영공에서 일회성 비행의 허가서 발급
- 항공기, 비행장, 공항의 소유권 취득, 리스, 위탁경영, 기타 이용권에 대한 허가서의 발급
- 항공사 직원에 대해 직업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확인서의 발급
- 카자흐스탄 민간 항공기의 등록 및 항공기에 대한 권리 및 거래의 등록

15) 당사국들이 국제조약으로 일방 국가에서 타방 국가의 자동차가 임시 진출입시 이에 대해 별도의 허가서를 요구하지 않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 카자흐스탄 국기를 달고 운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허가서의 발급
- 선박 명칭 허가서의 발급
- 유료고속도로의 건설 및 이용에 대한 관리
- 고속도로 이용규칙 준수 여부 감독
- 국제항공운송에 대한 감독
- 항공안전보장에 대한 감독 등(동 규정 제14조 및 제15조)

10) 에너지자원부

에너지자원부의 기본 과제 및 기능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 에너지자원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에너지자원부는 전기에너지, 원자력에너지, 광물자원, 열에너지단지, 석탄, 석유화학, 석유가스 산업 및 원자력에너지 이용 등과 관련한 정책의 개발 및 수행, 전기에너지, 원자력에너지, 광물자원, 열에너지단지, 석탄, 석유화학 석유가스 산업 및 원자력에너지 이용 등과 관련하여 분야간 조율, 열에너지단지 발전의 보장,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안보 및 독립 보장, 광물자원 산지의 재생 및 광물자원의 합리적 이용 등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동 규정 제13항). 그리고 아래와 같은 영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전기에너지의 이용, 지리연구, 지하자원의 이용,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 등에 대한 정책 수행
- 정부의 위임을 받아 외국의 해당 기관과 석유 수출을 위한 송유관 및 기타 운송수단의 건설 및 이용 등에 대한 협상 및 합의서 체결
- 석유산지 개발프로젝트에 의거한 석유 채굴에 대한 관리
- 카자흐스탄 국내시장에 대한 원유공급량의 결정
- 지하자원이용 및 석유사업수행에 관한 계약의 이행과정 등에 대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연례보고서 제출
- 탄화수소 원료 채굴에 관한 산지 개발프로젝트의 개발 및 승인 절차의 결정
- 지하자원사용 권리의 제공 및 석유사업수행과 관련된 계약에서 카자흐스탄의 이익 대리
-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거 지하자원의 탐사, 채굴, 공동탐사, 공동채굴에 대한 권리의 부여
- 원자력에너지의 이용과 관련된 법규의 제정 및 적용
- 방사능 안보와 관련하여 부처간 업무조율
- 생산물분배협정조건에 대한 입찰요건목록의 작성 및 정부의 승인을 위해 제출
- 송전소 등의 기술설비 상태 및 이용에 대한 감독

- 연료-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감독
- 지하자원이용자의 계약조건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
- 지하자원에 대한 모니터링
-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 대한 감독
-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과 관련된 법규의 준수 여부 감독
-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시 안전 문제, 핵무기 비확산 및 핵물질의 감독 문제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
-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과 관련한 물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에 대한 감독
- 방사능 안전 및 라이센스 조건 규범의 준수 여부 감독

11) 보건부

보건부의 기본 과제 및 기능에 대해서는 보건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보건부는 보건, 의료, 제약 교육 분야에 대한 정책의 수행, 국가가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무료의료혜택의 제공, 보건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등의 기본과제를 갖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는 아래와 같다.

- 보건, 의료서비스 향상, 의약유통, 의학 및 약학 등과 관련한 정책의 실행
 - 보건주체의 등록
 - 보건주체의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및 법인의 등록
 - 보건 관련 증명서의 발급
 - 5년마다 보건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증명서 검사
 - 의사 및 약사 시험의 수행
 - 의료서비스 분야의 감독
 - 약품 유통의 감독 등
- <관련 집행법률>
- 시민사회보장법

12) 산업무역부

산업무역부의 활동에 대해서는 산업무역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산업무역부는 국가의 산업발전과 관련한 국가정책의 수립, 혁신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정책의 수립,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환경의 조성, 산업·무역 관련 부처간 기능 조율 등의 기본과제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아래와 같다.

- 투자의 국가적 지원의 수행
- 특별경제구역 조성에 관한 단일국가정책의 수행
- 특별경제구역에서의 토지 사용료의 결정
- 투자혜택제공에 대한 결정

- 무기 및 폭발물 유통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
- 카자흐스탄 수출통제에 관한 법령에 의거한 수출입물품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
- 국가건설표준의 개발
- 건설을 위한 설계 요건의 승인 등

13) 환경부

환경부의 기본 과제 및 기능에 대해서는 환경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환경부의 기본 과제는 다음과 같다. 환경의 개선, 생태계의 보호, 환경보호, 자원이용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의 실현 및 부처간 기능 조율, 환경보호와 관련한 법령의 정비,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강화,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개발 등

그리고 환경부의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국가환경평가의 수행
- 천연자원이용과 관련하여 권한범위 내에서 라이센스 발급 동의, 계약 체결 동의
- 환경보호와 관련된 용역수행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
- 오존파괴물질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서 발급
- 수자원 이용에 대한 감독
- 자원이용자 및 환경오염원 목록 작성
- 카자흐스탄의 환경관련 법률 준수에 대한 환경 감독의 수행
- 지하자원 보호 감독 등

14) 경제예산기획부

경제예산기획부의 기본 과제 및 기본 기능에 대해서는 경제예산기획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경제예산기획부는 카자흐스탄의 사회-경제 발전의 전략적 목적, 우선순위 및 기본 방향의 연구, 국가의 재정, 투자 계획 수립, 국제 경제 및 금융관계의 관리 등의 기본과제를 수행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본업무를 갖고 있다.

- 국가예산의 계획 및 분석
- 국가자산 운영 정책의 수립
- 국가 사회-경제 발전계획의 수립
- 국가 관리 시스템의 수립
- 국가공무원 급여시스템 개선안의 수립
- 거시경제지표의 분석

- 투자프로젝트 우선예산집행목록의 작성
- 예산투자의 모니터링 및 효율성 평가
- 예산투자프로젝트의 경제평가 수행
- 비상국가예산의 수립
- 예산신청서 작성 절차의 수립 등

15) 비상상황부

비상상황부의 기본 과제 및 기능에 대해서는 비상상황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비상상황부의 기본 과제는 비상사태의 예고 및 종료에 관한 국가 정책 수립 및 실현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비상상황부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화재안전에 대한 점검 수행
- 건축물 준공 시 화재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검사 참여
- 비상사태의 경고 및 종료에 대한 감독의 수행
- 화재안전에 관한 기술적 규정 감독

16) 체육관광부

체육관광부의 기본 과제 및 기능에 대해서는 체육관광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및 스포츠 분야의 정책 수립을 기본과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아래와 같은 권한과 기능을 수행한다.

- 관광, 체육 분야의 관리
- 관광, 체육에 관한 법령 정비에 대한 제안 고안
- 관광, 체육 분야의 법안 준비에 참여
- 관광, 체육 분야의 실무 경험을 일반화하여 법령에 반영
- 관광 산업 종사자에 대한 증명서 발급 절차 규정
- 체육과 관련한 안전규칙의 고안 및 승인 등

17) 문화정보부

문화정보부의 기본 과제 및 기능에 대해서는 문화정보부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문화정보부의 기본과제는 다음과 같다. 문화, 문화-역사유적의 이용 및 보호, 언어정책, 정보, 문서보관 업무 등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수립, 문화, 문화-역사유적의 이용 및 보호, 언어정책, 정보, 문서보관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처별 기능 조율 등

이를 위해서 문화정보부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국가문화유적지의 등록
- 문화재의 임시 반출입에 대한 허가서 발급
- 카자흐스탄에 보급된 외국대중매체의 등록

- 국가 문서의 임시 반출에 대한 허가서 발급
 -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문서의 보관 기간 및 폐기 절차의 결정 등
- 18) 기타 중앙관청
이 밖에도 카자흐스탄에는 통계청, 토지관리청, 정보통신청, 자연保護政策청, 국가우주청, 반독점청 등의 중앙관청이 있다.

III. 지방행정

1. 지방행정제도

카자흐스탄의 지방자치조직은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헌법 제86조 제1항).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로 구성된다. 중앙집권제 국가로서 카자흐스탄의 지방정부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와 국가정책을 실행한다. 카자흐스탄은 14개의 주와 3개의 특별시로 구성되어 있다. 주를 ‘Oblasts’이라고 한다. 2개의 특별시가 있으며, 84개의 시(cities)가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2개의 특별시는 알마티, 아스타나, 바이코누르가 있다. 이전 수도인 알마티(Almaty)는 여전히 재정, 사업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이다. 아스타나(Astana)는 새로운 수도이다. 2개의 특별시를 제외한 14개의 지방행정단위의 구분은 전통적인 지역적 분류에 기초하고 있으며, 14개의 각 지방행정단위는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14개의 주는 알마티, 아크몰라, 악퇴베, 아리타우, 시기스카작스탄, 망기스타우, 솔투스틱카작스탄, 파블로다르, 카라간디, 코스타나이, 키질로르다, 옹튀스틱카작스탄, 바티스카작스탄, 잡빌 주 등이 있다.

주 또는 특별시는 다시 160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rations)와 그 이하의 기초지방자치단체(auls)로 구성된다.

2. 시의회 및 주의회(Maslikhat)

시의회 및 주의회를 Maslikhat라고 한다. Maslikhat는 각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며, 공공의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며, 주정부를 견제한다(헌법 제86조 제1항). 의원은 주민들의 직접·보통·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이들의 임기는 4년이다 (헌법 제86조 제2항). 의원들의 수는 중앙선거위원회(the Central Electoral

Commission of Kazakhstan)에서 결정한다. 주 내지 특별시의 의회의 경우에는 50명이 제한선이다. 시의회 및 주의회의 의원의 피선거권은 20세이며, 한 주 또는 시의 의원만이 될 수 있다(헌법 제86조 제3항).

시 또는 주의회의 권한은 계획,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정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승인, 지역별 관할 안에서 지역행정조직의 현안문제들에 대한 결정, 법률위임사항의 현안에 관한 지역정부대표자의 보고에 대한 고려, 상설위원회 기타 의회조직의 구성, 최근 의회조직의 활동에 대한 청문, 기타 의회의 기능과 관련된 조직의 현안에 대한 결정 등이다(헌법 제86조 제4항 1호부터 5호). 지방의회는 국가외교정책과 국내의 재정적 그리고 투자정책에 관해서 반대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지방의회는 카자흐스탄의 국가안보의 이익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는 국가적인 중요한 정부활동에 관해서 확립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권리와 법적 이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와 주지사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균일한 노동의 창설, 자본과 금융시장 및 상품과 용역의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지방의회와 주지사에 의한 지역발전계획은 국가발전계획에 일치하여야 한다.

특별시 또는 주의회의 권한은 대통령 또는 특별시 내지 주의회의 자체 해산에 대해서 취소될 수 있다(헌법 제86조 제5항). 특별시 또는 주의회의 관할,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절차, 의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게 된다.

광역자치단체는 의회를 갖고 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가 따로 없다.

3.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Akimat이라고 한다. 지방정부의 특별시장 또는 주지사는 Akim이라고 한다. Akim은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정부를 대표하며 지역행정부의 수장이 된다. 주지사는 중앙관청의 지역기관 및 지방예산에 의한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정부정책을 실현할 책임을 지게 된다. 각 주의 경제적인 능력과 인구의 규모와 상관없이 각 지방정부는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경제·사회정책 입안, 시행규칙 결정 및 시의회 또는 주의회가 지정한 예산에 대한 배분 및 시행, 공공재산에 대한 관리권 및 기능을 수행한다(헌법 제88조 제1항). 특별시장 및 주지사(Akim)는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군단위 이하의 지방정부 장은 특별시장 및 주지사가 임명한다.

주지사의 동의가 있어야 지방정부는 예산안에 있어서 세입의 감소와 지출의 증가에 대한 예산안을 지방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헌법 제88조 제2항).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지방정부의 독립적 행정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나 중앙정부는 정부령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지침부여 및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주민은 지방정부 결정사항에 대해 국가행정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헌법 제89조). 지방자치헌법과 법률에 합치하지 않는 주의회의 결정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다(헌법 제88조 제4항).